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직업안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구인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- 나.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활성화를 돕고, 근로자 등의 직업안정을 도모함

3. 주요내용

가.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(안 제28조제7호)

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

나. 사업자협회 설립요건 완화(안 제37조의2)

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

대통령령 제 호

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제28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
나. 제37조의2 제1항 중 “30인 이상의”를 “10인 이상의”로, “30인 이상”을 “10인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)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6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8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)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제37조의2(사업자협회의 설립)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·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<u>30인 이상의</u>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<u>30인 이상이</u>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② (생략)	제37조의2(사업자협회의 설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10인 이상의</u> ----- ----- <u>10인 이</u> <u>상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333